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2000. 11. 11.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1일
- 다. 상정일자 : 제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2000. 11. 11.)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은규

가. 제안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방침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 등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동기능전환 추진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를 동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방침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 건설교통국 소속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소관사무도 따라서 이관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항)
-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14조의2)
-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미비사항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함. (안 부칙제3조)
-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에서 규

정함. (안 부칙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구분청 기구를 보강·개편하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조례등을 동조례안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분청으로 이관될 사무 및 대민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음.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연재해업무를 취급하는 방재부서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2000. 6.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권고가 있어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였음.

○ 부칙 안 제1조에는 동 개정규정이 2000. 12.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를 포함하여 17개 조례를 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존속기한이 2001. 6. 30 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과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7. 7 한시기구와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승인·통보되어 설치하려는 것으로, 2001. 6. 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 운영기간이 불과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한시기구 설치로 인한 혼란과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동 개정조례안중 부칙 제1조와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보다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조례안이 2000. 12. 1일에 시행되기에는 사무실 확보 및 인력재배치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사료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

원회비용변상조례는 동조례의 내용상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자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주민자치과에는 어떤 업무의 팀이 있게되는가?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동행정팀, 주민자치사업팀, 그리고 사회진흥팀 임.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 인데 그 이후는?
- 답변요지(이은규 총무과장) : 아마도 존속기한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0. 11. 11. 유 남 렬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이 2000년 12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사무실 확보와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생각되므로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는 동조례의 내용상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어 일부 수정하고자 함.

다. 수정골자

- "2000년 12월 1일"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함. (부칙 안 제1조)
- "변상"을 "지급에 관한"으로 수정함. (부칙 안 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1조중 "비용변상"을 "비용지급"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2조중 "(일비) 위원"을 "(수당) 구소속공무

원이 아닌 위위으로 일비를 지급한다.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 (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정 (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0. 11. 11.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동조례안이 2000년 12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사무실 확보와 인력 재배치 등을 고려할 때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생각되므로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3조제4항에서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조례는 동조례의 내용상 제명을 비롯한 일부 용어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어 일부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2000년 12월 1일"을 "2001년 3월 1일"로 수정함. (부칙 안 제1조)
- "변상"을 "지급에 관한"으로 수정함. (부칙 안 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1조중 "비용변상"을 "비용지급"으로 수정함.
-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제2조중 "(일비) 위원"을 "(수당)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일비를 지급한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함.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4항과 관련)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2001년 3월 1일 —————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부 칙 (제3조제4항) (제명) (현행과 같음)	부칙 (제3조제4항) (제명) ————— 지급에관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위원의 비용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
제2조(일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2조(일비) (현행과 같음)	제2조(수당) <u>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어</u> —————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등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방침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 등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인 동기능전환 추진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본청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동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를 동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의 보강방침에 따라 행정관 리국 소속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토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나. 건설교통국 소속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면서 소관사무도 따라서 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다.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 함.(안 제14조의2)
- 라. 동기능 전환에 따른 관련 사항과 미비사항을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으로 일괄 개정함.(안 부칙 제3조)
- 마. 구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 까지로 부칙에서 규정함.(안 부칙 제4조)

3. 조례안(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15조, 제102조, 및 제111조
- (2)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2000.2.14 대통령령 제16713호) 제6조 및 제10조

나. 예산조치 : 2001년도 주민자치과 예산 별도편성 필요

다. 협의 : 서울시 승인 완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총무과·문화체육과 및 민원봉사과”를 “총무과·주민자치과·문화체육과 및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호 내지 제31호를 제13호 내지 제32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제6조제2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중 “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8호 내지 제39호를 제30호 내지 제41호로 하며, 제28호 및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물관리 업무

2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분청 과의 신설 및 팀의 신설 또는 과소속 변경 등으로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 내용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에서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동정업무담당주사"를 "동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의 파악

③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표 제2호중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를 "여성·청소년 아동복지분야"로 하고, 제4조제4항중 "부녀·가정복지 상담원"을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⑥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제30조중 "상공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제2항중 "시민"을 "구민"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각각 한다.

⑧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8조제2항중 “시민”을 “주민”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각각 한다.

⑨서울특별시마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예산회계법 123조”로 하고, 제6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⑩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삭제한다.

⑪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중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아동복지법 제6조”로 한다.

⑫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삭제한다.

⑬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중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장은 제외)”를
각각 삭제한다.

⑭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⑮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항중 “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⑯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각각 한다.

⑰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42조제3항”을 “법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구분청 기구중 주민자
치과의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0조</p>	<p>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는 <u>총무과</u>·<u>주민자치과</u>·<u>문화체육과</u> 및 <u>민원봉사과</u>를 둔다.</p> <p>②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11.(생략) (신설)</p> <p>12.~31.(생략)</p>	<p>제4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는 <u>총무과</u>·<u>주민자치과</u>·<u>문화체육과</u> 및 <u>민원봉사과</u>를 둔다.</p> <p>②</p> <p>1.~11.(현행과 같음)</p> <p>12. <u>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u></p> <p>13.~32.(현행 12.~31.과 같음)</p>	<p>제6조(생활복지국) ①(생략)</p> <p>②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35.(생략) (신설)</p>	<p>제6조(생활복지국)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35.(현행과 같음)</p> <p>36. <u>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u></p>	<p>제8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에는 <u>건설관리과</u>·<u>토목과</u>·<u>하수과</u>·<u>교통행정과</u> 및 <u>교통지도과</u>를 둔다.</p> <p>②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7.(생략) (신설) (신설)</p> <p>28.~39.(생략)</p>	<p>제8조(건설교통국) ①</p> <p>-----<u>치수방재과</u>-----</p> <p>②</p> <p>1.~27.(현행과 같음)</p> <p>28. <u>물관리 업무</u></p> <p>29. <u>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u></p> <p>30.~41.(현행 28.~39.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3조(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신설)</p>	<p>제13조(적무)① ----- ----- ----- ②동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관장한다.</p>
<p>제14조의2(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 등) ①저비용·고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본격적인 시행이전에 시범실시를 위한 동 기능전환 시범동(이하 "시범동"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시범동은 도화재1동과 합정동으로 한다. ③시범동의 사무중 일부는 구본청 또는 보건소로 이관하며, 시범동의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